

『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,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 지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기금의 용도를 정비(안 제6조)
 - 안전점검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항목 추가
 - 구미시 소유·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
 -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
 -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·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
 -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추가
 -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
-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해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 지정(안 제8조)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

- 자연재해저감시설 → 방재시설
- 「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」 → 「감염병」
- 영 제74조제1호마목 → 영 제74조제8호

○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“안전점검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항목”을 추가하는 등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재정비 하고,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 지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